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29
----------	------

제출연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 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과 조례 간 상이한 내용을 통일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나. 조례에 띄어쓰기 오류, 중복 표현 등이 존재하여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 현재 우리 교육청에는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 2. 주요내용

- 가.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기관 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5급 이상 상급기관으로 변경 (안 제2조제1항)
- 나.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협의회 가입대상 확대 (안 제3조제1항제7호 삭제)
- 다. 직장협의회설립증 교부 기한 7일에서 3일로 단축 (안 제4조제4항)
- 라. 직장협의회와 설립기관 간 합의는 문서에 의하도록 규정 (안 제11조제1항)
- 마. 협의회 해산 시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 신설 (안 제12조제4항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7]

-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1. 9. 7. ~ 9. 27) 결과 요약서 : [별첨 3]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별첨 4]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 [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 [별첨 6]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이나” 를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으로 하고,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자를 포함한다.” 를 “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타자등” 을 “타자 등”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 중 “제2호의” 를 “ 단서의” 로 하고, “지정하여” 를 “협의 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제7조에 따른 협의회규정과 협의 위원명부, 협의회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7일” 을 “3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3호 서식” 을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협의회 가입자격” 을 “가입자격”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무원중” 을 “공무원 중” 으로 하고, “회원명부등이” 를 “회원명부 등이” 로 한다.

제10조제4항 단서 중 “설립기관의 장은” 을 삭제한다.

제10조제6항 중 “회무” 를 “사무” 로 하고,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를 “경우에는 지체없이,” 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협의회규정등” 을 “협의회규정 등” 으로 하고, “없는 한” 을 “없는 한” 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가 해산한 때에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중 “근무시간중” 을 “근무시간 중” 으로 “협의회활동” 을 “협의회 활동”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근무시간중에” 를 “근무시간 중에”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③ (생략)

④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의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생략)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  
--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  
----- 공무원 중 -----  
-----  
----- 회원명부 등이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삭제) -----  
-----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사무 -----  
----- (삭제) -----  
-----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회의 의무) ① (생략)

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활동의 제한) 협의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협의회회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경우에는  
지체없이, -----  
-----  
-----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가 해산한 때에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

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  
-----  
-----  
----- 근  
무시간 V 중에 -----

##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과 조례 간 상이한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요인 없음

#### 4. 작성자

노사협력담당관 최강래 주무관(02-399-9073)

**【별첨 3】**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해 당 없 음	

【별첨 4】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행정6급	기철민
입안주관부서	노사협력담당관	통보일	2021.9.10
관련조문	검토 결과		조치사항
안 제2조~제4조 안 제8조~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일부 상이한 내용을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li> <li>- 직장협회의 설립 방법, 협의회 가입 공무원 범위, 협의회 설립 통보·협의회 규정 변경 방법 등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도록 변경함</li> <li>-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려는 것임</li> <li>-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단순 기술적인 내용이므로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li> </ul>		“평가대상 제외”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폐지법령, 알기쉬운 법령 정비와 같은 정책결정에 따른 일괄 개정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u> 1.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 입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1A서울교육023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노사협력담당관		
	담당자명	최강래	전화번호	02-399-9073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김소영	전화번호	02-399-9675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1년 09월 07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1년 09월 08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09월 09일

【별첨 6】

##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노사협력담당관	담당자	성 명 : 최강래 직 급 : 교육행정7급 연락처 : 02-399-9073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고태훈, 곽민재, 권정우, 김희진, 노희창, 송지은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	개정 내용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권고사항 없음 의견임.		원안동의 (권고사항 없음)

## 【별첨 7】

# 관 계 법 규

##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2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삭제 <2020. 5. 19.>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이하생략)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③ 협의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